



# 성평등가족부,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

-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% 증액된 5,978억원 편성
-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...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

- 성평등가족부(장관 원민경)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
  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200% 이하에서 **250% 이하 가구까지 확대**하여,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  - 아울러, **한부모·조손·장애·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**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, **최대 1,080시간까지 지원**한다.
  - 또한, 6~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,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%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.

2025년(요금 12,180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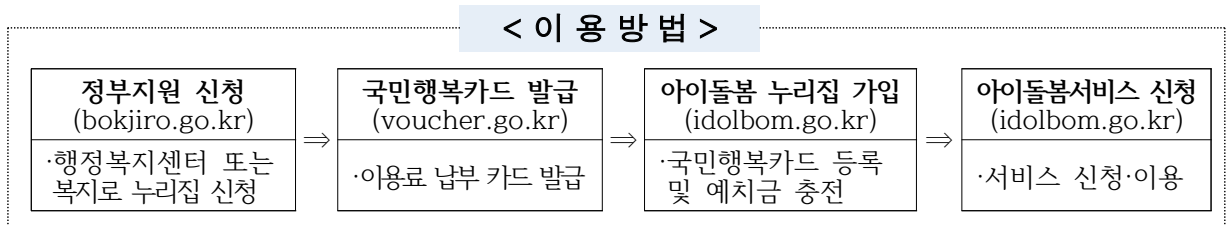
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)	정부지원 비율			본인부담금 추가지원
	1자녀		(다자녀)	
	0~5세	6~12세		
가 75% 이하	85%	75%	10%	
나 75% ~ 120%	60%	40%		
다 120% ~ 150%	30%	20%		
라 150% ~ 200%	15%	10%		
마 200% 초과	-	-		-

⇒

2026년(요금 12,790원)

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)	정부지원 비율			본인부담금 추가지원
	1자녀		(다자녀)	
	0~5세	6~12세		
가 75% 이하	85%	80%	(다자녀) 10% (인구감소지역) 5%	
나 75% ~ 120%	60%	50%		
다 120% ~ 150%	30%	25%		
라 150% ~ 250%	15%	10%		
마 250% 초과	-	-		-

-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  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(돌봄수당)은 전년 대비 5% 인상하여 시간당 12,180원에서 12,790원으로 상향했으며, 이에 따라 '26년 관련 예산도 1,203억 원 증액되었다.
  -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,500원에서 2,000원으로 인상하고, 유아돌봄수당(시간당 1,000원)과 야간긴급돌봄수당(1일 5,000원)을 새롭게 도입했다.
-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(idolbom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,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(bokjiro.go.kr)에서 신청하면 된다.



- 한편,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‘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’와 ‘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’가 본격 시행된다.
  -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‘아이돌봄사’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.
    - \*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('26.4.23.)을 기준으로 시·군·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
  - 또한,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·군·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“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,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”이라며
- “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,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**【붙임】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개요**

담당 부서	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	책임자	과 장	정보희	(02-2100-6361)
		담당자	서기관	강병관	(02-2100-6375)
			주무관	권은미	(02-2100-6247)

□ **사업 개요**

- (목적)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
- (근거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- (사업내용) 시간제 돌봄(12세 이하), 영아종일제 돌봄(36개월 이하)
  - (시간제) 취학 전·후 구분 지원, 연간 960시간 지원
    - \* 한부모·조손·장애·청소년부모 가정 연간 1,080시간
  - (종일제) 36개월 이하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(연간 2,400시간) 지원
- (정부지원) 이용가정의 소득유형(가형~마형)에 따라 차등 지원

[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(시간당 이용요금 : 12,790원) ]

유형	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)	영아종일제, 0 ~ 5세		6 ~ 12세		본인부담금 추가지원
		정부지원	본인부담	정부지원	본인부담	
가형	75% 이하	10,872(85%)	1,918(15%)	10,232(80%)	2,558(20%)	(다자녀) 10% (인구감소지역) 5%
나형	120% 이하	7,674(60%)	5,116(40%)	6,395(50%)	6,395(50%)	
다형	150% 이하	3,837(30%)	8,953(70%)	3,198(25%)	9,592(75%)	
라형	250% 이하	1,919(15%)	10,871(85%)	1,279(10%)	11,511(90%)	
마형	250% 초과	-	12,790원(100%)	-	12,790원(100%)	

\* ㉠형 한부모·장애부모·장애아동·청소년부모·조손 가정에는 5% 추가 지원

\*\* 0~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·청소년 한부모 가정(중위소득 250%이하)은 이용요금의 90% 지원

\*\*\* 휴일 및 야간(22시~익일 06시) 이용요금의 50% 가산, 유아돌봄수당·영아돌봄수당·야간긴급돌봄수당 등 대상별·유형별 아이돌보미 추가 수당은 정부 지원